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24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민형배·서미화·정동영

이개호 • 백혜련 • 이정문

이수진 • 정성호 • 이용선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 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18(분쟁조정)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 츠비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사건 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 나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8조의18(분쟁조정) ①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하거나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었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정기간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본다.